

3 중견기업 독립성 기준

- 기업이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할 경우 출자를 통해 별도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기업은 중소기업 규모라 하더라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자회사이거나 관계기업과 합한 규모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Tip 독립성 기준은 주식 등의 출자관계로 인해 발생하므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만 적용합니다.

Tip 사회적기업은 관계기업 제도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영리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독립성 기준을 모두 적용합니다.

- 개별기업이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 총액(10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Tip 단,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부실징후기업 등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인정하여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의 출자전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중견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분소유비율 산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후반부 ‘중견기업 제외대상’에서 상세하고 다루고 있으니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 구체적으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주식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기업 단독 또는 (모)기업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자체 규모와 관계없이 종전기업이 됩니다.
-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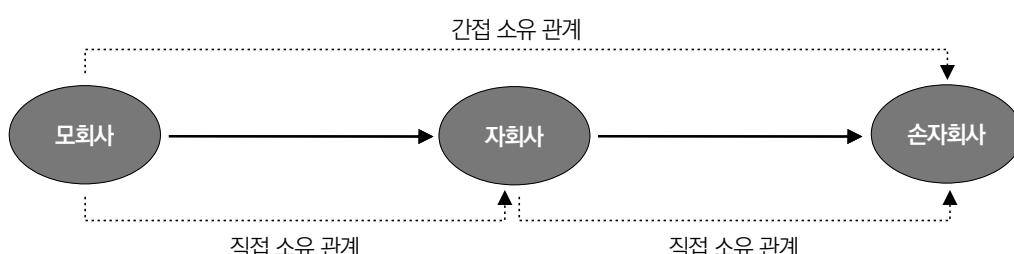
Tip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 주식회사 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으로서, 종전에 동 규정은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적용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상법상 회사(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인 모든 법인에 적용됩니다.

- 이 때, 최다출자자는 출자자 개개인을 따로 보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끼리도 합산하여 판단하는데, 법인주주의 경우 그 법인의 임원과 합산하고 개인은 개인의 친족과 합산하여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Tip 임원이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제외한 등기이사를 말하며, 이외의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를 의미합니다.

Tip 친족이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의합니다.

- 동 규정은 직접적인 소유 관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직접 소유는 아래의 그림에서 모회사 - 자회사, 자회사 - 손자회사의 관계에 해당하며, 간접 소유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거쳐서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 산정방식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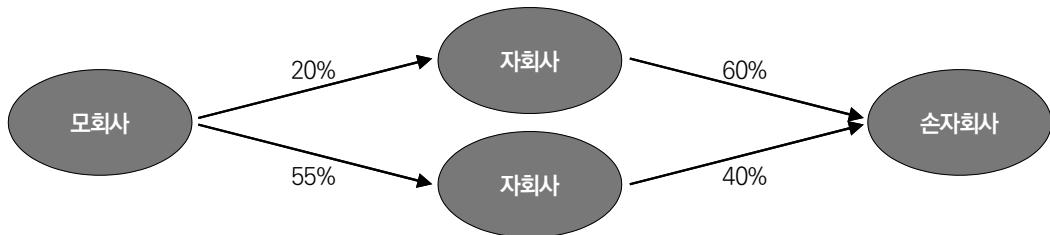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비율이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Rightarrow **간접소유비율 : $100\% \times 60\% = 60\%$**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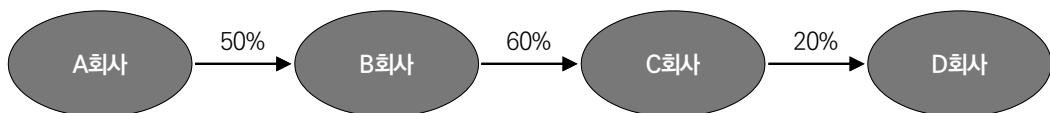
모회사가 자회사를 50% 미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비율과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비율을 곱한 값이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Rightarrow **간접소유비율 : $40\% \times 60\% = 24\%$**

사례 3



모회사의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한 비율이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Rightarrow **간접소유비율 : $(20\% \times 60\%) + (100\% \times 40\%) = 52\%$**

사례 4



간접소유는 각 단계별로 최대출자자 조건을 충족하면 소유관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며, 상위 단계부터 차례대로 계산 \Rightarrow **간접소유비율 : $100\% \times 100\% \times 20\% = 20\%$**

자주하는질문(FAQ)

Q 20

2018년 6월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A기업이 중소기업 B의 지분을 40%이상 소유하게 된 경우, B기업은 중견기업인가요?

→ 2016년 4월 28일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5천억원 이상 기업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한 피출자 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최초 지분관계만 적용됩니다.

Q 21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은 800억입니다. A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B기업이 35%, C기업의 대표이사가 65% 소유한 경우 A사는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B기업이 A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고 A기업이 해당업종(C17)의 매출액 기준(1,500억원)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C기업의 대표 이사가 B기업의 임원이라면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Q 22

B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A기업이 29%, A기업의 임원이 40%를 소유한 경우, B기업은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은 1차적으로 모법인이 피출자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해야 적용합니다. 즉, 소유비율 30% 이상인지 여부는 기업이 소유한 비율로만 판단하고, 최다출자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만 임원이 소유한 비율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동 적용 사례의 경우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있으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23

중소기업인 A기업(유한회사)의 지분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분 70%를 소유한 경우 A기업은 중견기업인가요? ◎ 네

→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상법」상 모든 회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A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24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3개년 평균매출액이 300억원입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비영리법인인 B기업이 A기업의 지분을 30%를 소유하고 최대출자자인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하나요? ◎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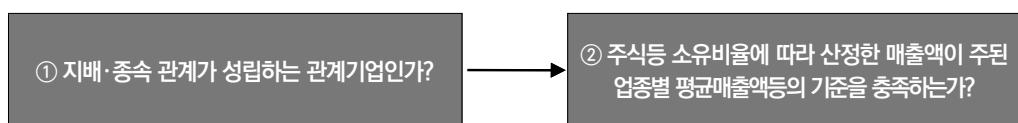
→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15.6.30.) 제3조2 나목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 법인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 지배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A의 경우 교육서비스업의 규모기준인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 관계기업 제도의 기본 개념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매출액을 주식 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여 중견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준용하여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말하며, 이 경우 지배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며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합니다.

Tip 외부감사대상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하지 않는 회사(자산총액 120억원 미만, 부채총액 70억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 주권상장법인(예정 법인 포함) 등을 말합니다.

- 또한, 관계기업에 속한다고 하여 모두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관계기업 간 주식 등 소유 비율 및 구조, 시기, 업종 등에 따라 기업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러 종속기업을 가진 지배기업의 경우 관계기업 간 합산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중견기업에 해당하나, 지배기업 1곳만이 관계기업인 종속기업은 관계기업 간 합산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인 지배기업이 중소기업이었던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시점이 3개 사업 연도 이내인 경우 종속기업은 곧바로 중견기업이 되지 않으며, 3년 간의 중소기업 유예 기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관계기업 제도의 판단 및 적용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① 지배·종속 관계에 따른 관계기업 판단

- 지배·종속 관계의 단순구조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입니다. 이 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주식등 소유 비율이 30% 미만이거나 최다출자자가 아니더라도,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또는 자회사를 거쳐 주식등을 우회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지를 판단합니다.

- Tip**
1. 자회사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종속기업만을 의미합니다.
 2. 법령에서는 '특수관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 등의 소유비율 계산 시 합산 대상이 되는 아래의 개인을 이 책에서는 특수관계자로 표현하였습니다.
 - 가.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나. 위의 '가'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Tip 지배·종속관계에 있어서 최다출자자 결정 시, 지배기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은 그 개인의 친족과 합산하여 판단. 또한 유형별로 최다출자자를 각각 판단하므로 다수의 지배기업 존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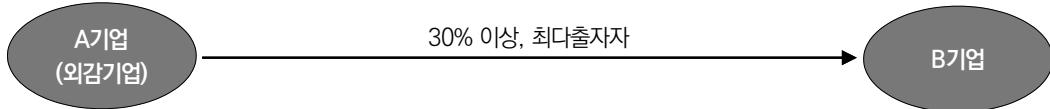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배·종속의 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의 주식 등 소유관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 소유관계의 변동사항은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 반영되지 않으며, 지배기업의 사업연도가 변경될 때에 반영됩니다.
- 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배·종속 관계를 판단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폐업일
관계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등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 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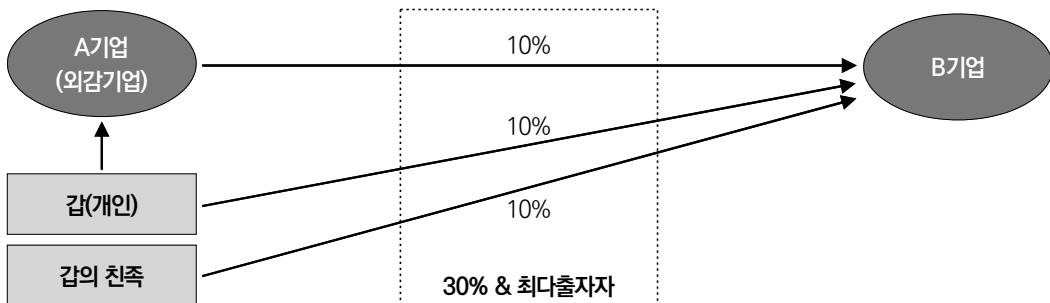
-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 ①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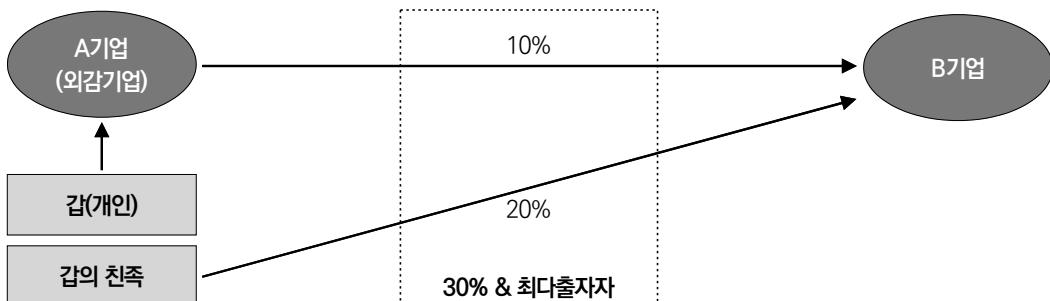
사례 1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 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사례 2

* 갑(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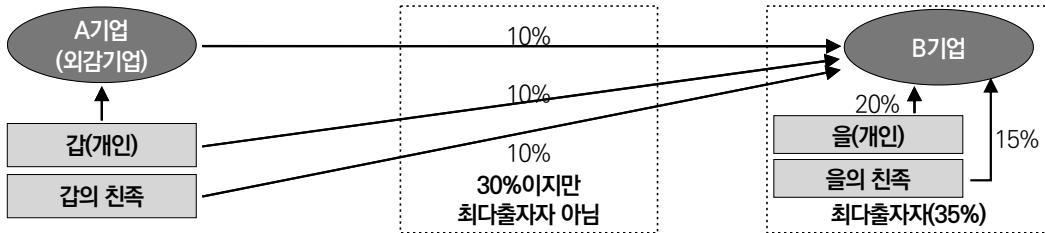
A기업이 특수관계자(갑 및 갑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사례 3

* 갑(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A기업이 특수관계자(갑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사례 4



※ 갑(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 을(개인) 및 을의 친족 : A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A기업이 특수관계자(갑 및 갑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A기업과 관련이 없는 을과 을의 친족이 합산하여 B기업의 최다출자자임 ↪ A기업과 B기업은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유형 ②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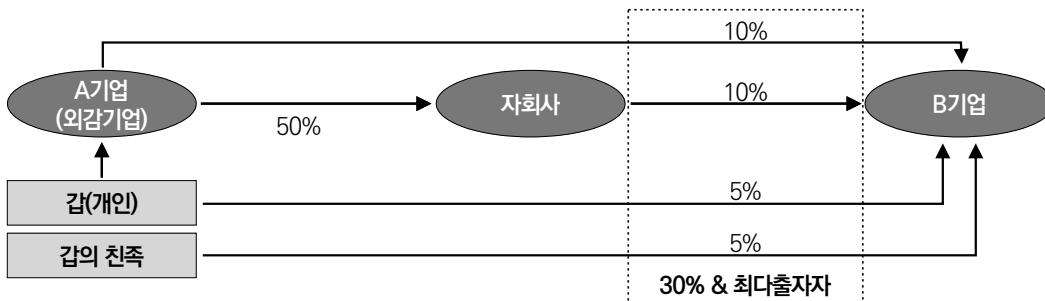
사례 1



※ 자회사 :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유형1]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유형에도 동일하게 적용)

A기업이 자회사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사례 2



A기업이 자회사 및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유형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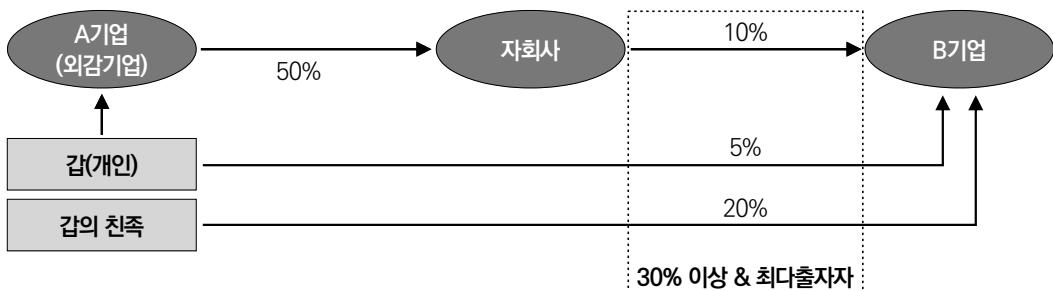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3호 관련)



A Corporation does not directly own shares of B Corporation, but its subsidiaries have consolidated ownership reaching over 30%, thus making B Corporation the largest shareholder. This relationship is established through subsidiary 1 (non-listed) and subsidiary 2 (listed).

유형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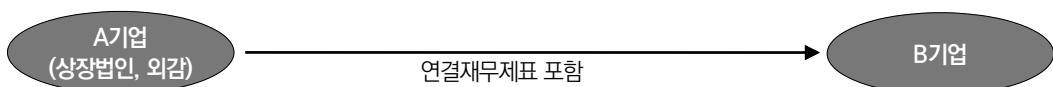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



A Corporation's subsidiary and its affiliate hold shares of B Corporation, totaling over 30%, thus making B Corporation the largest shareholder. This relationship is established through subsidiary B and its controlled entities.

유형 ⑤

지배기업이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 코스닥)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과 지배·종속관계 성립



If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mpanies as defined above, and A Corporation is a listed company, it must include B Corporation in it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reby establishing a control relationship.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가. 법인인 기업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 나. 가목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 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삭제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라. 삭제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접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1.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사항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1항에 따른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다.
-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 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 바. 해산·清算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②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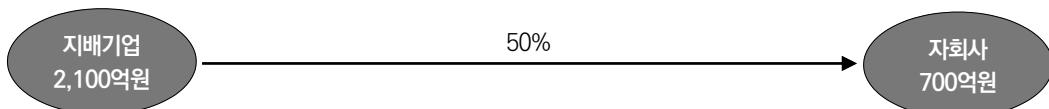
-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여 관계기업이 되더라도 모두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는 방식과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 Tip**
1. 과거 관계기업 제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기업에 대해서 유예를 허용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관계기업에 대해서 유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2015년 이전에는 관계기업 간의 규모 합산 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과 자산총액 기준을 모두 적용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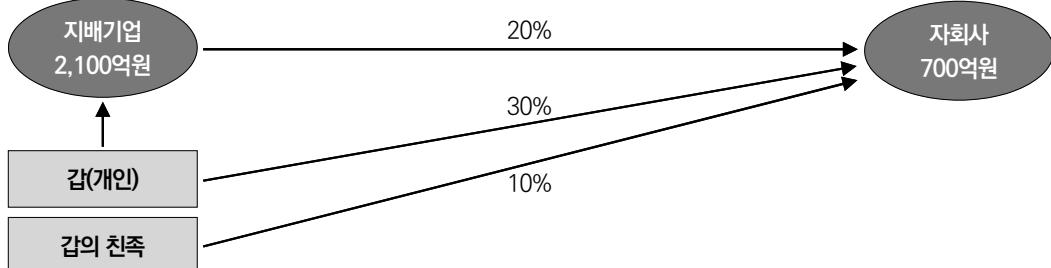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자회사 및 손자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경우
 - 실질적 지배(50% 이상 소유한 경우) : 100% 합산
 - 형식적 지배(50% 미만 소유한 경우) : 그 비율만큼 합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한 경우 :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소유 비율로 합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한 경우 : 지배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소유 비율과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로 합산

유형 ①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



- | |
|---|
| ■ 지배기업 : 지배기업(2,100억원) + 자회사(700억원) = 2,800억원 |
| ■ 자회사 : 자회사(700억원) + 지배기업(2,100억원) = 2,800억원 |

유형 ②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2,100억원) + 자회사(700억원×20%) = 2,240억원
 - 자회사 : 자회사(700억원) + 지배기업(2,100억원×20%) = 1,120억원
- ※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제외하고 기업의 소유비율만으로 산정

유형 ③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하고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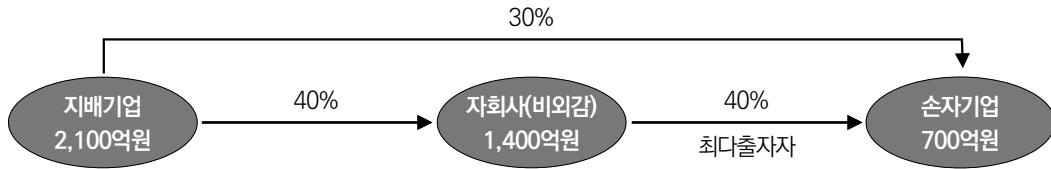
- 지배기업 : 지배기업(2,100억원) + 자회사(1,400억원) + 손자기업(700억원×40%) = 3,780억원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간 간접 소유비율 : $100\% \times 40\% = 40\%$
 - 자회사 : 자회사(1,400억원) + 지배기업(2,100억원) + 손자기업(700억원×40%) = 3,780억원
 - 손자기업 : 손자기업(700억원) + 자회사(1,400억원×40%) + 지배기업(2,100억원×40%) = 2,100억원
- ※ 자회사가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자회사 손자기업 간 관계기업 성립

유형 ④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하고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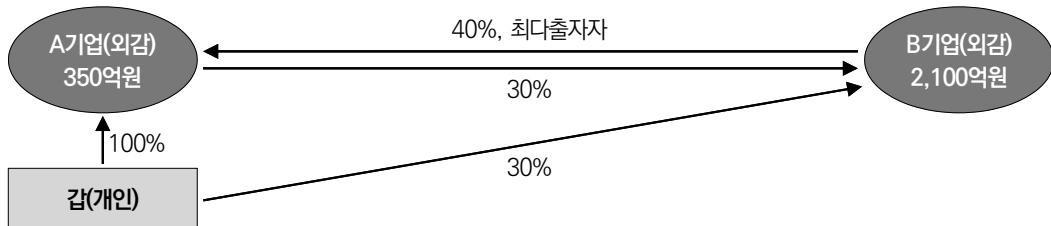
- 지배기업 : 지배기업(2,100억원) + 자회사(1,400억원×40%) + 손자기업(700억원×24%) = 2,828억원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간 간접 소유비율 : $40\% \times 60\% = 24\%$
- 자회사 : 자회사(1,400억원) + 모회사(2,100억원×40%) = 2,240억원
- 손자기업 : 손자기업(700억원) + 지배기업(2,100억원×24%) = 1,204억원

유형 ⑤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2,100억원) + 자회사($1,400\text{억원} \times 40\%$) + 손자기업($700\text{억원} \times 46\%$) = 2,982억원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간 소유비율 : 직접 30% + 간접 $16\%(=40\% \times 40\%)$ = 46%
- 자회사 : 자회사($1,400\text{억원}$) + 지배기업($2,100\text{억원} \times 40\%$) = 2,240억원
- 손자기업 : 손자기업(700억원) + 지배기업($2,100\text{억원} \times 46\%$) = 1,666억원

유형 ⑥ 기업 상호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A기업 : A기업(350억원) + B기업($2,100\text{억원} \times 40\%$) = 1,190억원
- B기업 : B기업($2,100\text{억원}$) + A기업($350\text{억원} \times 40\%$) = 2,240억원

Tip 상호 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기업 간 주식 소유비율이 큰 값을 기준으로 평균 매출액을 합산합니다.

관련 법령

[별표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 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 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자주하는질문(FAQ)

Q 25

주된 업종이 신발제조업인 A기업(지배기업)과 부동산임대업인 B기업(종속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이 A기업은 1,700억원, B기업은 2,000억원일 경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 A기업과 B기업의 주된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의 주된 업종은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따라가므로, A기업과 B기업의 주된 업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간주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A기업의 주된 업종이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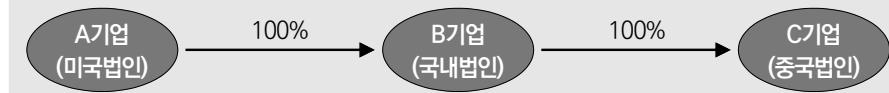
유한회사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 등을 50%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기업인가요?

☞ 예/아니오

→ A기업이 B기업 주식 등을 50% 이상 소유하므로 지배·종속관계는 성립하지만, 지배기업인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인 유한회사인 경우에만 관계기업에 해당합니다.

Q 27

미국에 소재한 A기업이 국내법인 B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B기업은 중국에 소재한 C기업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 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 아니오



→ 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의 관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지배기업을 외부감사 대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종속기업을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기업 제도는 국내기업 간의 출자관계에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A, B, C기업은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Q 28

A의료법인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최다출자자 요건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A, B법인은 관계기업인가요? ☞ 아니오

→ 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의 관계는 상법상 회사 등 영리법인에만 적용합니다.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은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있더라도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29

개인(갑)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과 B기업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면 A, B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 아니오

→ 관계기업은 기업 간에 주식을 소유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지배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A, B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단 1주도 없는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관계기업도 아닙니다.

Q 30

A기업(지배기업, 12월 결산법인)과 B기업(종속기업, 3월 결산법인)은 2019년 1월 1일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5일에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전량 제3자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언제부터 관계기업이 아닌가요? ☺ 2019년 7월 15일

- 해당 사업연도의 지배·종속 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 등 소유관계로 결정 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다만,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 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등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두 기업은 2019년 7월 15일부터 관계기업이 아닙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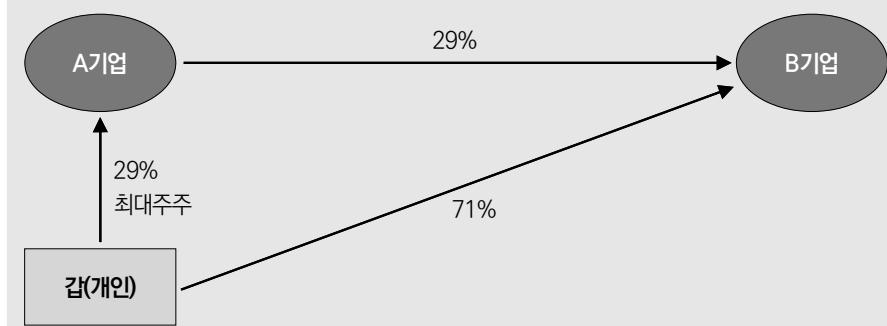
Q 31

3년 평균 매출액이 1조원인 A중견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기업 B의 주식을 30% 최다출자자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B기업은 중견기업인가요? ☺ 네

-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두 기업은 관계기업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B기업의 평균매출액 산정 시, 형식적 소유(50%미만 소유)로서 지배 하고 있는 A기업의 평균매출액의 30%를 합산하므로(3,000억 원) B기업은 중견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여 중견기업입니다.

Q 32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A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한 개인(갑)이 B기업의 주식을 71% 소유한 경우 A, B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 아니오



- 개인(갑)은 A기업의 최다출자자이지만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A기업의 특수 관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A기업과 B기업 간 지배·종속관계 성립여부 판단에 있어서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A기업이 소유한 B기업의 주식이 30% 미만이고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A, B 기업 간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33

다음과 같이 연속적인 다단계 지분구조를 갖는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은 어느 단계 까지 합산하나요? ➡ 최대 상·하 2단계



→ 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관계는 간접지배의 경우 최대 상·하 2단계까지만 정의되어 있으므로, 기업별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A기업 : Ⓛ 3,500억원 + {ⓑ (1,400억원) + ⓒ (2,100억원 × 50%)} = 5,950억원
- B기업 : Ⓜ 1,400억원 + {ⓐ (3,500억원) + ⓒ (2,100억원) + Ⓝ (350억원 × 50%)} = 7,175억원
- C기업 : Ⓝ 2,100억원 + {ⓐ (3,500억원 × 50%) + Ⓜ (1,400억원) + Ⓝ (350억원)} = 5,600억원
- D기업 : Ⓝ 350억원 + {ⓑ (1,400억원 × 50%) + ⓒ (2,100억원)} = 3,150억원

Q 34

A기업(6월 결산법인)이 B기업(2019년 2월 1일 창업,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2019년 3월 10일에 50% 인수했다면, 2020년 4월 1일 종전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균매출액 등의 합산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주식등 소유관계는 지배기업의 결산일 기준으로 하되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합산합니다. 즉,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의 직전 3개 사업연도(2016.1.1.~2018.12.31.)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산정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12개월을 역산하여(2019.4.1.~2020.3.31.) 산정하고 이를 합산합니다.

Q 35

외감법인 A기업(12월 결산법인)은 2013년 1월 10일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 B기업과 관계기업이 되었으나, 이후 2015년 7월 20일 B기업이 폐업하였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은 관계기업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 2015년 이전에는 지배·종속의 관계를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 관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령에서는 창업·합병·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창업일·합병일·분할일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지배·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단순 지분변동은 종전처럼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기업은 2013년 초에 분할했더라도 다음해인 2014년 4월 1일부터 B기업과 관계기업이 성립하며, 2015년 이후에는 관계기업인 B기업이 폐업한 2015년 7월 20일부터 즉시 관계기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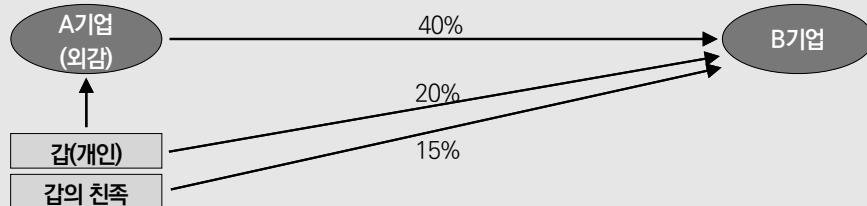
Q 36

외감법인 A기업(12월 결산법인)과 B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A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2014년 3월에 분할하였습니다. 2014년 11월에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기업과 B기업 간 규모를 합산하려고 합니다. A기업의 규모는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분할시점으로 판단하나요?

-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이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경우, 해당기업의 매출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말일 기준으로 매출액 등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을 그대로 활용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 따라서, 위 사례에서 관계기업에 속한 A기업의 매출액 산정은 기존법령이 적용되는 2015년 3월 31일 까지는 A기업의 2013년 말일 기준의 결산자료를 활용하며, 2015년 4월 이후부터는 '직전사업연도에 분할한 경우로서 직전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 이므로 산정일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 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월 매출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Q 37

운수업을 영위하는 A기업(3년평균 매출액 700억원, 자산총액 900억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B기업(3년평균 매출액 600억원, 자산총액 500억원)의 주식을 아래 그림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A, B기업은 중견기업 입니까? ➔ 네



* 갑 : 갑의 친족과 합하여 A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 ① A기업, 갑, 갑의 친족이 소유한 주식비율을 합산하면 75%로서, 30% 이상 최다출자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지배·종속의 관계 성립
- ② 지배기업인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 기업(자산총액이 120억원을 초과)이므로 관계기업 성립
- ③ 관계기업에 따른 평균매출액의 합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A기업 : A기업(700억원) + B기업(600억원×40%) = 940억원
 - B기업 : B기업(600억원) + A기업(700억원×40%) = 880억원
- ④ A, B기업 모두 관계기업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이 운수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인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를 충족하므로 중견기업입니다.

Tip

관계기업에 있어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업종은 둘 중에서 평균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적용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